

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신청하세요!

농산물대금 선지급제란?

벼 재배농가에게 벼 수확대금의 일정
 부분을 미리 4월부터 10월까지 매월
 선지급해주는 제도

■ 신청기간 및 장소

- 신청기간 : 2020. 3 ~ 5월(농협별 자체수매 약정체결 기간)
- 신청장소 : 주소지 지역농협
 - 농협과 자체수매 약정 체결 후 농협에 사업신청서 제출

■ 문의처 : 아산시농업기술센터 유통지원과 T. 041-537-3745

지 역	농 협	전화번호
염치읍	염치농협	041-544-1355
배방읍	배방농협	041-533-0541
송악면	송악농협	041-537-8602
탕정면	탕정농협	041-541-6999
음봉면	음봉농협	041-542-3140
둔포면	둔포농협	041-531-9211
영인면	영인농협	041-542-9611
선장면, 도고면	선도농협	041-542-0158
인주면	인주농협	041-533-3244
온양(동지역), 신창면	온양농협	041-544-4869

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지원사업 추진

농산물대금 선지급제란?

벼 재배농가에게 벼 수확대금의 일정부분을 미리 4월부터 10월까지 매월 선지급해주는 제도

사업추진배경

- ▶ 농업인이 농협자체 수매로 출하할 벼의 70%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별로 나누어 미리 지급하여 소득의 안정적 배분과 계획적 경영 도모
- ▶ 농협에서 우선 지급(출하 선금)하고 아산시에서 이자를 보전하는 제도임

사업개요

- ▶ **사업대상** : 아산시에 주소를 둔 벼 재배 농업인 중
 - 벼 4,000m²이상 재배 농업인
 - 농협 자체수매 출하 약정농가
 - 벼 재해보험 가입 농가
- ▶ **농산물대금 선지급 기간** : 4~10월(7개월)
- ▶ **지급액** : 30만원~200만원/월
 - ※ 적용단가 : 전년도 자체수매 평균매입가(70%)
- ▶ **사업대상농협** : 아산시 관내 지역농협
- ▶ **사업신청방법** : 주소지 지역농협
 - 농협과 자체수매 약정 체결 후 농협에 사업신청서 제출